

消費者被害補償規程

經濟企劃院은 1985年 12月31日 制定되어 1986年 2月1日부터 施行되어온 「品目別 消費者被害補償規程」의 내용에 있어 대폭 수정한 「消費者被害補償規程(案)」을 作成하여 1989年 7月14日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함으로써 8月1日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를 소개코자 한다(편집자註).

消費者被害補償規程

第 1 條(목적) 이 規程은 消費者保護法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와 事業者間의 紛爭의 원활한 解決을 위하여 品目別로 消費者의 被害를 報償할 수 있는 基準을 定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適用原則) 物品을 購入하거나 用役을 提供 받은 消費者가 關聯賞品이나 用役의 品質, 價格, 去來條件 및 表示上의 不一致 등으로 正當한 不滿을 提起한 때에는 製造業者, 販賣業者, 輸入業者 및 用役을 提供하는 者(以下 “事業者”라 한다)는 原則적으로 이 基準이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하여야 한다.

第 3 條(補償) 이 規定에서 補償이라 함은 品質保證期間 또는 有效期間(이하 “品質保證期間”이라 한다) 以內에 製造·流通課程上 또는 用役의 利用課程에서 發生한 消費者의 被害에 대하여 消費者에게 行하는 修理·交換·還拂·賠償·解約·履行 등을 말한다.

第 4 條(報償責任者) ①消費者被害에 대한 補償은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者가 第1次的으로 報償責任을 지며 品質保證書 등에 報償責任者를 별도로 規定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第2項의 경우는 販賣業者는 關聯物品의 製造業

者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 5 條(品質保證書) ①事業者는 販賣時 消費者保證法 第8條에 規定하고 있는 事項이 包含된 品質保證에 관한 內容을 記載한 證書(以下 “品質保證書”라 한다)를 交付하거나 그 內容을 製品에 表示하고 이에 品質保證期間, 保證條件 및 部品保有期間을 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輸入業者가 製品의 品質保證에 관한 內容을 表示함에 있어서는 한글 또는 한글을 병기하여 表示하여야 한다.

②第2項의 品質保證條件에는 최소한 이 基準이 定하고 있는 補償基準의 內容을 表示하여야 한다.

③事業者가 製品의 品質保證期間을 表示하지 않은 경우에는 消費者가 製品을 購入한 날로부터 1年(食品의 경우 流通期限)을 品質保證期間으로 본다.

④品質保證書에 販賣日字가 記載되어 있지 않거나 品質保證書의 未交付·紛失 등으로 정확한 販賣日字의 確認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製造日로부터 12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品質保證期間을 起算한다.

第 6 條(領收證 등의 效力) 品質保證書 또는 이와 유사한 證書가 發給되지 않은 品目의 경우 稅法 規定에 의하여 發給되는 領收證 또는 關聯類似製

品の品質保證書도 第5條의 品質保證書의 效力을 가진다.

第 7 條(補償期限) 事業者는 被害補償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内に 補償與否 및 內容을 消費者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補償期限은 通報日로부터 14日을 經過할 수 없다.

第 8 條(費用負擔) ①無償修理의 경우에는 修理에 所要되는 部品代 및 原資材費用 등 消費費用을 事業者가 負擔한다.

②有償修理의 경우에는 修理 및 部品交換에 所要된 순수部品代 및 原資材費用에 한하여 消費者가 負擔한다.

③被害救濟를 目的으로 物品의 運搬費를 負擔한 消費者는 이 基準에 추가하여 그 實費報償을 要求할 수 있다.

第 9 條(價格還拂 등) ①消費者가 表示된 價格을 經過하여 物品을 購入했을 경우 事業者는 經過金額을 還拂하여야 한다.

②消費者가 中古製品을 新製品價格으로 購入한 경우 그 差額을 還拂하거나 당해 新製品으로 還拂해 주어야 한다.

③廣告 또는 表示와 製品의 內容이 不一致한 경우 消費者는 購入日로부터 30日以内に 還拂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事業者의 訂正措置 以後의 購入者는 還拂을 要求할 수 없다.

④製品의 使用說明書 內容이 不充分하거나 어려워 消費者가 被害를 입게된 경우 事業者는 製品을 交換해 주거나 輸入價格을 還拂하여야 한다.

⑤事業者가 契約條件을 不履行한 경우에는 消費者는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으며 消費者가 契約解除에 따른 損害가 발생한 때에는 事業者에게 被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⑥訪問販賣에 있어서 詐欺·強迫에 의하여 契約을 締結한 때에는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第10條(交換 및 還拂基準) ①事業者가 製品의 瑕疵등으로 인하여 消費者에게 製品을 交換하여 줄 경우에는 同一製品으로의 交換을 原則으로 한다.

②事業者가 消費者에게 價格을 還拂하여야 할 경

우에는 輸入價格 還拂을 原則으로 하며, 購入價格은 證書 또는 領收證에 記載된 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證書 또는 領收證을 保管하지 않아 購入價格에 紛爭이 있는 경우에는 적은 金額을 提示하는 者가 立證責任을 지며, 立證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勸獎消費者價格으로 還拂한다.

第11條(調整依頼) 事業者 또는 消費者(以下 “當事者”라 한다)가 이 規程에 例示되지 않은 被害類型에 대하여 補償合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當事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그 調整을 依頼할 수 있다.

第12條(司法的 救濟) 이 規程에 依한 消費者被害補償은 司法的 救濟 依頼를 排除하지 않는다.

第13條(品目 및 補償基準) 對象品目 및 品目別 被害補償基準은 다음과 같다.

區分	品種	被害類型	補償基準	備考
1.食料品 (18個 品種 106個 品目)	酪農製品類 우유, 분유, 연유, 버터, 발효유, 치즈, 이유 식 등	1)含量, 容量 不足 2)부패, 변질 3)流通期限 經過 4)異物混入 5)副作用 6)용기파손 등으로 인 한 상해 사고	當該製品 2배 交換 또는 購入價還拂 治療費, 經過 및 資金賠償	- 賃금은 被害로 인 하여 賃金 損害가 發 生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여 金 額을 입증 할 수 없는 賃금은 政 府勞賃單 價를 基準 으로 한다

